

문서번호 98- 국제인권- 901
 수 신 사회부 담당기자
 발 신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소장: 채수일 목사, 담당: 장소영)
 제 목 시국사범에 한의원 통원치료 첫 허용조치에 대한 논평
 날 짜 1998년 9월 29일 (총 1 쪽)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 시국사범에 대한 한의원 통원치료에 대한 논평

1.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는 법무부가 9월 24일 처음으로 구치소에 수감중인 시국사범에게 한방 통원치료와 한약반입을 허용한것에 대해 재소자들의 인권과 건강권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이를 환영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관련 국가보안법으로 구속기소된 박경순씨(41 울산 늘푸른서점 대표)는 24일부터 법무부의 허락을 받아 한의원 통원치료를 허락받았고 3주간의 요구과정을 거쳐 한약반입이 되었다. 박경순씨는 구속직전까지 만성간염에 따른 간경화증세를 앓아오고 있었으며 이미 6개월 시한부인생을 살고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동일하게 한방치료를 요구해온 이은미씨와 홍정연씨에 대해서도 일단 구치소측은 물리치료를 허용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중증 허리디스크증세를 앓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한방 통원치료도 빠른시일내에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나아가서는 재소자의 건강을 유지할 기본권 차원에서 시국사범만이 아닌 일반 재소자, 특히 30년 이상을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해온 각종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장기수들에게도 특별 치료가 필요할 때 외부치료 등의 건강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는 이 문제에 관해 연대활동을 전개했던 「참된 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영남위원회’ 구속자 인권을 위한 시민 사회단체모임」과 함께 그동안 잘못된 교도행정의 관행으로 고통받았던 재소자들의 인권이 지속적인 개혁조치속에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끝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소장 채수일